

FATCA 및 CRS에 따른 조세정보의 자동교환 과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

정부는 2015. 6. 미국 정부와 사이에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FATCA 협정”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FATCA 협정의 체결에 앞선 2014. 10. 29. 정부는 OECD가 마련한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이하 “CRS”라 합니다)에 따라 각국과 조세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는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이하 “MCAA”라 합니다)에도 서명하였습니다.

FATCA 협정 및 CRS에 따른 조세정보의 자동교환이 시행되면 국세청은 각국과의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통하여 한국거주자의 역외금융재산 및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는데, 그 동안 미신고된 역외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자진신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FATCA와 CRS란

- 2010. 3.경 미국 연방 법률인 고용회복촉진법의 일부로 제정된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이하 “FATCA 법”이라 합니다)에 따르면 미국 외 국가의 금융기관들은 미국 과세당국인 IRS(Internal Revenue Service)에 미국인의 금융계좌를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미국은 동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각국 정부와 협정의 체결을 진행하여 왔고, 우리 정부도 2015. 6. FATCA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 미국의 FATCA 법 시행에 대응하여 OECD는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을 통해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끼리 CRS(*)에 따라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MCAA의 체결을 추진하여 왔는데, 우리 정부는 2014. 10. MCAA에 서명하였습니다.

(*) CRS란 개별 협정을 체결할 때마다 정보교환에 관한 협정의 내용이 다양하여 혼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환될 정보, 정보의 수집 및 교환 방법 등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OECD가 마련한 공통보고기준을 말합니다.

2. FATCA 및 CRS의 국내 시행 관련 현황

- FATCA 협정에 따라 한국이 미국인의 금융정보를 미국에 제공하게 됨과 동시에 미국도 한국거주자의 금융정보를 한국에 제공하게 되는데, 정부는 FATCA 협정의 국회 비준동의를 위하여 2015. 7.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였

는바, 국회 비준동의가 완료되면 국세청이 미국으로부터 한국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MCAA는 서명국들(*) 간에 별도의 개별 협정이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2017년부터 정보교환을 시행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정부가 향후 각국과 개별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국세청은 CRS에 따라 해당 국의 금융기관에 계좌를 보유한 한국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 MCAA 서명국들 현황: 총 75개 국가 및 지역(2015. 12. 3. 현재)

- 2017년 시행국(53): 앵골라, 아르헨티나, 바베이도스, 벨기에,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불가리아, 케이만 제도,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퀴라소,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페로제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지브롤터, 그리스, 건지,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아일랜드, 맨섬, 이탈리아, 저지, 대한민국,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리셔스, 멕시코, 몬세라트, 네덜란드, 니우에,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산마리노, 세이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터크스케이커스제도, 영국
- 2018년 시행국(22): 알바니아, 안도라, 앤티가바부다, 아루바, 호주, 오스트리아, 벨리즈, 캐나다, 칠레, 쿡아일랜드, 코스타리카, 가나, 그레나다, 인도네시아, 일본, 마셜제도, 뉴질랜드,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사모아, 신트마르틴, 스위스

⇒ [MCAA 서명국 확인하기](#)

- FATCA와 CRS의 본격 시행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5. 11.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전부 개정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동 규정안은 조만간 확정되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활용의 필요성

- FATCA 협정 및 CRS에 따른 금융정보의 자동교환이 시작되면 미국 및 CRS 체결국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거주자의 역외소득 및 역외금융재산에 관한 정보가 한국의 과세당국에 제공되고, 이와 같이 제공된 정보가 신고내역과 불일치할 경우에는 미신고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번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금융정보의 자동교환이 본격화되기 전에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으로서 그 동안 역외소득·재산에 관하여 신고하지 않아 왔던 부분에 대하여 미신고에 따른 제재를 완화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를 활용하여 신고를 함이 바람직하며, 미신고의 상태가 지속될 경우 향후 FATCA 협정 및 CRS에 따라 역외소득·재산에 관한 정보가 한국 과세당국에 제공되면 역외탈세에 따른 무거운 제재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법무법인 세종의 FATCA 및 CRS와 역외소득·재산의 신고 관련 자문 실적

- 법무법인 세종은 그 동안 FATCA 및 CRS와 다수의 역외재산 등과 관련된 자문 및 사건 처리를 한 변호사, 회계사들로 ‘역외재산 등 자진신고 법률자문팀’을 구성하여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세종은 정부 등의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하여, FATCA, 한미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특정 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 법무법인 세종은 2015. 7.부터 관련 기관에 종합적인 CRS 연구용역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세종은 2014년 미주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미국에서 “FATCA의 시행으로 인한 한미 금융계좌정보 공유가 갖는 의미(자산관리 등)”에 대해 4회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법무법인 세종의 역외재산 자진신고(혹은 미신고) 관련 주요 자문 및 사건 처리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대기업 대표가 M&A 결과로 해외에서 자녀 명의로 취득한 수 천억 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증여세포탈 수사 및 형사재판 사건
 - ⇒ 자녀명의 해외 부동산 취득 및 해외 펀드투자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증여세포탈 수사 및 재판사건
 - ⇒ 해외금융계좌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등 부과처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자문(명의신탁 주식 등도 함께 문제된 사안)
 - ⇒ FATCA 시행과 관련한 외국 금융기관 한국지점의 정보 수집 범위, 한국 과세당국에 대한 보고대상 정보 등에 법률 자문
 - ⇒ CRS 시행과 관련한 외국 금융기관 한국지점의 관련 정보 수집 및 보고(한국 과세당국 등)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법률 자문
 - ⇒ 일본 국외재산조서 제도(한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와 유사)의 시행과 관련한 재일교포와 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한 종합 법률 자문
 - ⇒ 이중거주자 여부,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등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한국 외에 존재하는 재산 및 소득의 처분 방안에 대한 수 건의 종합 법률 자문(문제되어 검토되어진 국가: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러시아, 태국 등)
 - ⇒ 조세조약 및 해당 국가의 조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인지 여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 등에 대한 종합 법률 자문
 - ⇒ 본건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의 시행에 따른 “자진신고 필요성과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 법률 자문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진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246	E-Mail. hjikim@shinkim.com
● 정태성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228	E-Mail. tsjeong@shinkim.com
● 이종원 변호사	TEL. 02 316 1791	E-Mail. jwonlee@shinkim.com
● 정인화 선임공인회계사	TEL. 02 316 4219	E-Mail. ihchung@shinkim.com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http://www.shinkim.com>